

전주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단219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김영복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 피고와 B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1. 11. 11.자 매매계약을 19,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 원인 판단

가. 청구 원인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 11. 11.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1,9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1,9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B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약인수를 통하여 인수하기도 하고,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몰랐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

별지